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1.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노동자 쉼터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이용자 준수 사항을 규정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신설)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급식 지원 등

나.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자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보조금 지원 근거 명확화

라. 용어 및 문장 정비(안 제4조,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통과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법상 노동자”를 “근로자”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5. 이동노동자 급식 지원
6. 이동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물품 지원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쉼터”를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목 “(위탁 및 재정지원)”을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

지원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지원 및 위탁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업·법인·단체·개인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7조(컴퓨터 이용자 준수 사항) 컴퓨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컴퓨터의 시설물 훼손하는 행위
2.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도박, 음주, 흡연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p> <p>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 기준법」 등에 따른 <u>법상 노동자</u>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 음)</p> <p>② ----- ----- <u>근로자</u>----- ----- ----- -----.</p>
<p>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 지증진 사업)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u>추진</u>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4. (생 략)</p>	<p>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 지증진 사업) -----</p> <p>----- <u>예</u> <u>산의 범위에서 추진</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u></p> <p>5. <u>이동노동자 급식 지원</u></p> <p>6. <u>이동노동자의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물 품 지원</u></p> <p>7.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u>쉼터</u>를 설치·운영</p>	<p>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① -----</p> <p>----- ----- ----- ----- <u>쉼터(이하 “쉼터”</u></p>

영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③ (생략)

<신설>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신설>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컴퓨터 이용자 준수 사항) 컴

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컴퓨터의 시설물 훼손하는 행위

2.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도박, 음주, 흡연 행위

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업·법인·단체·개인에게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생략)

③ ----- 제2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지원 및 위탁에 -----

--.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

1. ~ 3. 생략

4.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

는 휴게시설의 설치·운영. 이 경우 휴게시설은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생략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4호에 따라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전단에서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람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노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배달

가. 소화물배송(「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소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나. 택배(「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집화 또는 배송하는 노무를 말한다)

다. 그 밖에 음식, 신문, 학습지, 상품 등의 배달

2. 대리 운전(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노무를 말한다)

3. 방문 판매(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노무를 말한다)

4. 대여 제품 방문 점검(고객이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하는 노무를 말한다)
5. 방문 교육(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나 교육 교구를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노무를 말한다)
6. 보험 모집(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 영업점에 제출하는 노무를 말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무 외에 주된 업무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업무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노무

②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2. 냉난방시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

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생 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생 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 및 안전
강화,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37조(생활물류 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서비스종사
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물류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 제공
2.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운송수단 정비시설 제공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노무 및 취업상담 등 구직 지원
4.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항으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 략

구미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는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노동복지과 노동권익팀 박현정(☎480-6212)

소 관 부 서		노동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이 호 정
	팀 장	김 진 희
	담 당 자	박 현 정 (480-6212)